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4907(본소), 2023나549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명도청구의 반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4907(본소), 2023나54914(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3646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임창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기훈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6. 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36466(본소), 2021가단 572493(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잔금 명목의 5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의무는 피고의 위 잔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조경공사와 캐노피공사를 하는 등 약 20,000,000원 상당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잔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수, 판사 진현지, 판사 김혜진

별지